
별점측정 가이드라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2023. 2.

목 차

제1장. 개 요

- 1. 목적 1
- 2. 적용범위 1
- 3. 벌점부과 원칙 등 일반사항 2

제2장. 벌점측정 항목별 참고사항

- 1. 건설사업관리 분야 벌점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5
- 2. 설계 등 용역 분야 벌점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17

제3장. 유형별 벌점 이의제기 사례

- 1. 행정심판례 24
- 2. 벌점 이의제기(취소·경감) 사례 34

부 록

- 1. 벌점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 57
- 2. 이의제기 의견서 60

유의사항

이 별점측정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별표8](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의 주무관청 포함),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별점 점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을 측정·부과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별점측정기준별로 별점 측정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별점 관련 대표적인 행정심판례·이의제기(별점 사전통지 취소) 등을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별점 측정·부과 시 참고자료로써 법적 구속력 및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으며, 별점 점검기관이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개요

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라 별점 점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을 측정·부과할 때,
- 관계법령 및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점을 합리적으로 측정·부과할 수 있도록 별점측정기준의 각 항목별 참고사항 등 세부부과기준을 제시하여 별점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또한, 별점관련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점을 측정·부과하게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부실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책무를 다한 경우 불합리하게 별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별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별점 점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별점을 측정·부과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별점부과와 관련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점 점검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점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벌점부과 원칙 등 일반사항

○ 벌점부과 원칙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준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벌점을 측정·부과하도록 규정
- 따라서, 벌점 점검기관은 벌점을 측정하게 된 사안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만약, 현장점검 당시 업무 소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부실공사 발생 우려 등을 사전에 해소한 경우에는 벌점을 측정·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 정의 [대법원 판례 2018두64924판결(2019. 11. 15. 선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바, 동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부실공사 여부 판단(판결문 : 32페이지 참고)

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준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벌점을 부과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 **(분담이행방식)** 건설Eng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행한 경우, 해당 분담업체 및 소속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3.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벌점 측정·부과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실의 행위 주체에게만 벌점을 측정·부과하여야 한다.

4. 현장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점 측정·부과

- 벌점 측정·부과 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벌점측정기준 부실내용의 단순 문구의 해석·적용이 아닌 입법 목적이나 취지, 현장여건 및 사안이 발생한 상황이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부실방지를 위해 소관 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벌점을 측정·부과하여야 한다.

5. 객관적·합리적 해석 필요(자의적 해석 지양)

- “주요구조부”, “재시공” 및 “보수·보강” 등은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1. 용어의 뜻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별점 점검기관이 객관적 문헌의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1. 정의 참조]

- * (주요구조부)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
- ** (재시공)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것
- *** (보수·보강)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

[※ (행정소송사례) “보완시공”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벌점 취소]

<사실관계>

- 2017년, 00빌딩 신축공사 설계사로 선정된 A사는 발주청이 결정한 신기술 공법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으나,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실시된 감리 과정에서 해당 공법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고, A사는 2019년 2월 기본설계를 보완했지만 결국 당초 예정보다 210일 늦은 2020년 3월에야 건물이 준공됨
- 발주청은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조물 보완 시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A사에 벌점 2점 부과

<판결사유>

- 법원은 벌점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완시공은 이미 시공이 이뤄진 이후 이를 보강·보충하기 위한 시공이 이뤄진 경우를 뜻하고, 단순히 시공 전에 ‘보완 설계’가 이뤄진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설계사가 안전성의 문제로 기본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진 것을 ‘보완 시공’으로 보고 발주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출처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판례 인용]

제2장 별점측정 항목별 참고사항

1. 건설사업관리 분야 별점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 참고사항

- ① 민원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검측업무 지연 발생이 예상되어 발주청에 현황보고 시행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여도 현장의 특수성 감안하여 별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 : 건설사업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64조(공정관리)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94조(공정관리) ⑨ 상동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 이행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 2010)」의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별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 :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7.1 작성업무 구분 일반사항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철근배근 범위가 표현되지 않아 철근 수량 산출시 차이가 예상되는 둔각부, 예각부, 단면변화부의 형태별 단면도 등은 주철근 조립도와 전개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수량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일반도 : 대표단면도와 둔각부, 예각부의 형태별 단면도.
- 2) 구조도 : 주철근 조립도, 재료표(Bar-Bending)
- 3) 가시설 및 가설교량 : 개요도 및 대표단면도

(3) 시공상세도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일반도 :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면
- 2) 구조도 : 철근전개도, 철근상세도, 재료표(Bar-Bending)
- 3) 가시설 및 가설교량 :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4) 주요도면 작성주체

- 1) 실시설계도면(설계단계) : 설계자
- 2) 시공상세도(시공단계) : 시공자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3)	기성 및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 **참고사항**

- ① 기성검사 후 주요 구조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재시공 및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기성대가 지급 보류 등)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기성 및 준공검사가 현장여건(민원, 시공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관련 절차의 지연이 명확한 경우에는 계획공정의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현장 상황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별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였으나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 **참고사항**

-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등을 통하여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승인을 하였으나, 인·허가청에서 검토의뢰 또는 승인결과 통보를 지연한 경우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별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5)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 **참고사항**

- ①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 **참고사항**

- 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계획공정 차질(월간 공정실적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 제외) 이 발생했음에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구조부의 재시공,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유의해야 한다.
- ②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 **참고사항**

- ① 품질시험 종목 및 시험횟수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험시공계획서 등은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 **참고사항**

- ①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사용에 대하여 시공사에 시정지시 등을 하였으나, 시공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별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자재는 철근·철골·레미콘·아스콘 등 주요구조부를 구성하는 자재와 단열재, 층간소음재 등 준공 시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부위를 구성하는 자재 등 실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에 표기된 주요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9)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 다) 이하 생략	1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 **참고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의 경우,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경우 자격미달로 보지 않으며, 발주청 등은 이 외의 사항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에 사전 보고·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별점을 부과하지 않을수 있다.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퇴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원부족이 생긴 경우, 배치계획 조정 등으로 통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인력 채용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별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 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 **참고사항**

① 같은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는 배치계획에 표기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준으로 한다.

※ 예) 건축 1, 건축 2 → 건축 1 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3번 이상 이유 없이 교체한 경우 (건축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 **참고사항 (없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부실방지를 위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에 발주청 지시사항 등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시공사 등에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시방기준·사업계획의 변경이 어렵거나 시공사가 계약서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관리 소홀	
	가) 구조검토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나) 구조검토 관리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2

▶ **참고사항 (없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 참고사항

① 기술지원 기술인이 해당분야 공중에 착수 이후, 진행중인 공중(공사중지 제외)의 점검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등 현장점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다.

※ 「건설사업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1조 제4항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 및 점검종류, 점검시기 확인 必

②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의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 감리원)의 점검 횟수 기준이 다르므로 부실 측정 시 해당 법령 및 계약에 의한 기준을 적용토록 유의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월 1회), 주택법(분기별 1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 참고사항(없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하였으나, 시공사(원도급사, 하도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건설사업 관리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벌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시공사(원도급사, 하도급사)의 귀책 사유 등으로 행정처분, 계획공정 차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란 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2. 설계 등 용역 분야 별점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별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해당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별점을 측정·부과할 수 있다.
 - **(1 ~ 8, 12항)**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단독 혹은 공동)에 측정·부과하되, 2)항 토질·기초 조사와 3)항 현장측량 조사 용역 업무가 분담수행인 경우에는 해당 분담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에 한하여 측정·부과한다.
 - **(9, 10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에 한하여 측정·부과한다.
 - **(11항)**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에 한하여 측정·부과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현장 사전조사 후 현장여건의 변경 등으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민원이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못한 경우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관계기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협의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관계기관에서 조사범위의 위치, 면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2)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①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 지역의 민원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 토질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비용 등의 문제로 발주청에서 불허하여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청에서 발주한 토질조사 수량 및 토질 시험항목의 부족에 의한 경우
- 한정된 토질조사 자료로 인한 지반의 불확실성으로 연약지반 분포 추정 및 압밀 침하량 산정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조사지점과 지점사이 급격한 토질변화가 발생하여 기초자료 평균값에 영향을 주어 변경되었을 경우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현황 측량값이 현장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경우 건진법 제53 조제1항에 따라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현황측량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예산 문제 등으로 재측량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 **참고사항**

- ① 발주청의 특정 공법심의를 통한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재시공, 보수·보강이 발생하더라도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 **참고사항**

① 총 공사비의 변경 사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벌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현장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민원 등)에 의한 공사비 변경
- 공사발주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 현장의 압판정에 의한 공사비 변경
- 설계시 토취장 및 사토장 미협의로 인한 공사비 변경

※ 향후, 벌점 부과 후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설계사 과실비용을 산정한 경우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계사에게 심의자료를 반드시 공개 필요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참고사항**

①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설계자의 의견청취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시공되어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발생한 경우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벌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발주청과 서면 등으로 구체적 협의·검토를 하여 자재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 참고사항

- ① 설계 당시 자재 품질·규격이 적합하여 발주하였으나, 공사 발주 이후 주요 자재의 품질·규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 참고사항

- ① 감독자의 지시는 서면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시한 경우 적용하고, 업무 연관성 등의 사유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 참고사항

① 같은 분야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는 배치계획, 착수계 등 명시된 참여기술인 기준으로 한다.

※ 예) 토목 1, 토목 2 등의 배치계획이 있는 경우, 토목 1에 해당하는 건설기술기술인을 3번 이상 이유 없이 교체한 경우 (토목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 참고사항

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및 협의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정기한을 초과하거나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별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 참고사항 (없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1

▶ 참고사항 (없음)

- ① 발주청과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수행한 경우에는 벌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유형별 별점 이익제기 사례

□ 행정심판례

○ [별점 2.1]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	부과일자	2015. 6월
별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별점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014.7.22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관한 기동 점검 수행 결과 총 34개의 지적사항 발생 - 이미 시공된 3개층 바닥 피복두께 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됨 		
이익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7.22 실시한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기동점검단 현장 점검 결과로 지적한 34개 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미 시공된 3개층 부분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 검토 결과,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는 안전한 구조'라는 검토를 받음 - 기동점검단 현장 점검 당시 철근배근 시공이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청구인은 시공이 30%, 70% 진행된 시점에는 검측을 한 바 있으나, 90%까지 진행된 시점에는 건축주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검측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함 - 시정조치를 완료한 이후로 콘크리트 타설한 결과 계획공정 (계획23% → 실행 28%)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 		

판결 사유

- 청구인이 4층 슬라브 구간 철근배근 시공이 90% 진행된 시점에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지 않아 검측을 하지 않은 사실, 이미 시공된 3개 층의 철근배근의 피복두께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 청구인은 2014.7.22 피청구인 소속 기동점검단으로부터 4층 슬라브 구간의 철근배근 시공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점을 지적받자 2014.7.26 이를 시정하는 시공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 법규 및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시공이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청구인의 위와 같은 확인의무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다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동점검단으로부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지적받은 후 수정하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미 시공된 3개 층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보완시공이 필요없다는 검토를 받은 점, 2014.7.22 기동점검단의 점검 당시 실시공정률(27%)이 계획공정률(23%)보다 앞서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 보완시공이 필요하다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벌점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별첨 2. 1(다)]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다)	부과일자	2019. 6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별첨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 임의반출에 대한 검측업무의 소홀 1)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적정한 외부사토 공사시행에 대한 확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가 외부사토공사를 변경승인 내용과 다르게 미지정 사토장에 반출 - 현장 확인·검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위와 같은 불법 행위 발생 2) 위 사항에 대한 공사시행을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감독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부조리 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수급자로부터 외부토사 반출대장 등을 제출받아 기 승인된 장소에 정상적으로 토사가 반출되는 것으로 확인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토반출 현황 점검 및 사토반출물량 확인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연의 업무를 다함 - 또한 토사의 반출은 구조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보완시공이 필요하지 않고 이에 따른 계획공정에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첨부과 대상이 아님을 소명 		
판결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반출되는 사토를 피고가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것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 자체나 공사의 안전성과는 무관하여 이 사건 임의반출로 건축물 등의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임의반출이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5호 나목 2.1.의 다)에 해당함을 전제하는바, 사토장의 임의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별첨 2. 11(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 무단 이탈 벌점 관련

측정번호	2.11(나)	부과일자	2022. 3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책임기술인)	-	벌점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술인은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것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한 바, 무단이탈로 볼수 없음. 		
판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별도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결여하여 위법함 -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의 부과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이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일작업에 따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 평일에 휴무하였고, 이는 현장 무단 이탈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함 		

○ [별첨 2. 17] 건설사업관리자의 하자 발생 벌점 관련

측정번호	2.17	부과일자	2016. 8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발생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하자발생액의 1천분의 5에 미달되어 하자가 1회도 발생하지 않은 것 - 공동이행방식이라 할지라도 부실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설물의 누수는 방수공사로 이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므로 ‘업무분장’ 및 ‘배치계획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에 벌점을 부과해야함 		
판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자발생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해당 공종인 방수공사 금액만을 축소 제시한 것으로 누수로 인한 전체의 기능상실을 고려한다면 하자 발생액은 도급금액의 1.5%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청구인에게 하자 발생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을뿐더러 하자발생액을 산출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은 누수의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 금액의 일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책임기술자 및 비상주기술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누수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방수공사로서, 이 사건 용역에서 건축공사부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건설사업관리단 내부 업무분장’과 ‘배치계획표’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에는 청구인 소속 직원 외에도 건축사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 방수 검측 및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금액을 산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제5항, 별표 8의 5. 나. 2.17.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별첨 2. 18] 하도급 관리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8	부과일자	2017. 11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업 체 : 2점 기술인 : 각3점	-	벌점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가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지연통보·미통보한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불법하도급 또는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등을 목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설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없음 - 청구인들은 시공사에 하도급계약의 체결·변경 사실을 통보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적기에 통지하지 아니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시공사에서 하도급계약 체결·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리업체인 청구인들이 직접 통보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고, 하도급 통지지연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하도급 관리 소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 - 하도급계약 체결·변경사실을 지연통보·미통보한 시공사는 과태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만 벌점을 받은 청구인들은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가혹하고, 시공사가 받은 과태료에 대하여서도 지나치게 가혹함 		

판결 사유

- 청구인들은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 시공사는 하도급 특별점검 시점에는 총 9건의 하도급계약 중 8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들이 시공사와의 공정회의절차에서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발주청에 통지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것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사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하도급계약 체결·변경사실을 지연통보·미통보한 시공사는 과태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만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적용받는 누계 평균벌점은 추후에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 못지 않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별첨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경우 벌점 관련

측정번호	3.6	부과일자	2020. 4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벌점취소 (행정심판 승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목록의 품명란에는 단가가 낮은 '방부목'을 기재, 재료비란에는 단가가 높은 '합성목재'의 단가를 기재하여 설계용역의 공사비를 과다 산출하는 등 설계도서의 불일치로 벌점 부과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불일치는 단순한 업무착오 내지 계산착오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사유 (판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u>부실공사</u>'란 <u>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u>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목록의 품명란에는 단가가 낮은 '방부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반해 '재료비'란에는 단가가 높은 합성목재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발주청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합성목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이 사건 공사에 '방부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합성목재'를 사 		

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 53조 제1항에서 정한 벌점부과의 요건인 '건축설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설계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벌점 이의제기(취소·경감) 사례

[1. 건설사업관리 분야]

○ [벌점 2.1(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가)	부과일자	2018. 10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아파트 벽체 철근을 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철근 배근 검측 시 철근 규격 및 간격만 확인하고 철근 가닥 수에 대해 미확인		
이의제기 내용	<p>- 벌점 기준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 보완 시공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p> <p>- 또한, 평균적으로 철근 개수가 아니라 간격으로 검측 하는 것이 적정함에 따라 벌점 부과 재검토 필요</p>		

측정번호	2.1(가)	부과일자	2022. 6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피난연결통로 지반개량을 위한 CGS 시공시 시공계획서 없이 시공상세도만 작성하여 시공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시공 상세도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시공 완료함.		
이의제기 내용	<p>- 기 승인된 시공계획서와 동일하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시공상세도만 제출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합동회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소명</p> <p>- 피난연락통로 굴착부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상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터널 전체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벌점 재산정 필요</p>		

측정번호	2.1(가)	부과일자	2022. 8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수펌프의 공장검수 시, 기동방식을 설계도면(소프트스타터)과 상이한 방식(인버터)으로 시험한 후 검수 및 품질확인을 하여, 지하도로의 침수원인을 제공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펌프의 기동방식이 기계분야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계 시방서 및 KS규정의 펌프 시험방식에도 기동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인버터 기동방식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험현장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 		

측정번호	2.1(나)	부과일자	2021. 3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중 발생된 균열에 대한 구조검토 등 정밀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보강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아 ① 교량 안전진단 결과, 교량 슬래브 하면에 누수백태 확인됨, ② 정밀 안전진단 결과 다수의 균열 및 백태가 확인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중 발생된 콘크리트의 초기균열은 허용균열폭 보다 작은 미세균열로, 균열보수 절차에 따라 조치 완료, 각종 점검 및 인수인계시 조치 완료가 확인됨을 소명. - 또한, 교량 슬래브 하면에 균열 및 백태 등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장기간 대기 노출로 인한 2차 응력과 공용 중 진동과 처짐으로 발생되거나 진행된 균열로 구조적 손상은 아닌 것임을 소명함. 		

○ [별첨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2	부과일자	2020. 5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 시공에 대한 거푸집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는 기 제출 되어 승인된 단면도와 같이 시공하여 검측하였으나, - 콘크리트 타설 중 목수가 벽체철근 상단지지 철물 위에 연속으로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승인 없이 상단 지지 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벽체철근이 도미노현상이 발생되면서 전면으로 전도된 사항으로 시공 상세도 소홀이 아닌 작업팀간의(목수, 철근) 의사소통 부재, 목수팀의 단편적인 사고, 작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소명함. 		

○ [별첨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3(가)	부과일자	2022. 8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사의 준공검사원 제출 때까지 배수펌프 시운전을 실시 또는 지시하자 않아, 배수펌프의 기동불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하도로 침수를 방지하지 못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전 모든 검사항목의 기준에 적정하게 펌프의 시운전을 시행한 근거를 제출하였으며, 펌프의 작동불량은 시설관리자의 지침 미숙지와 오조작 등이 원인임을 소명 		

측정번호	2.3(나)	부과일자	2020. 1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관 부실시공으로 배수기능에 지장이 있음에도 보완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기성처리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관로 고품질 확보를 위해 CCTV 조사 시 시방서의 허용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관내부 미세한 사항까지 약식 보고서에 기재, 공정회의 등 회의록에 시공사에 각종 지시 사항을 기록하는 등 절차에 따라 기성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소명 - 미흡된 부분은 시공사의 보수완료 후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시행 		

○ [별첨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4(가)	부과일자	-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실제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3회), 향타기(2회), 타워크레인(2회), 비계(2회), 동바리(2회)를 실시하였으나, 갯폼의 정기안전점검은(1회)만 실시(현재 갯폼해체 완료)		
이의제기 내용	- 갯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정기안전점검(2회차)은 건축물(3회차) 정기안전점검 시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담당자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시 갯폼 2회차 점검 부분이 누락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갯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		

측정번호	2.4(나)	부과일자	2017. 12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 소홀		
이의제기 내용	<p>- 사업주체가 지하주차장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진행하여 실제 착공일이 3개월 지연되었으며. 이제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상의 특정된 일자를 준수 할 수 없었고, 실제 공조공사 일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p> <p>-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는 유권해석</p>		

측정번호	2.4(나)	부과일자	2019. 9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추락위험이 있는 고위험 작업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이의제기 내용	<p>-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이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함</p> <p>①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근로자 ⇨ 특별교육 및 점검 실시</p> <p>②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 웹 카메라 3대 추가 설치</p> <p>③ 안전관리 인원 추가 투입 ⇨ 안전담당 관리자 5명 추가 투입</p> <p>④ 가시설 굴착단계 등 위험공종 ⇨ 사전 컨설팅 및 작업허가제 시행</p>		

측정번호	2.4 (나)	부과일자	2020. 10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p>- 시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소작업자 안전고리 미체결, 가설통로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동바리 설치간격 미준수 등 근로자보호 기본 10대 항목을 위반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로 벌점 부과</p>		
이의제기 내용	<p>-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체에서는 일일안전점검 실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평소 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을 소명</p>		

○ [별점 2.5]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5(가)	부과일자	2022. 4월
별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설계변경사항(○○○ 가로등 사전 공사)의 반영을 확인하지 않음		
이의제기 내용	<p>-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청의 서면보고·승인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본 사안은 차로 확장에 따른 단순 수량 증감사항으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판단하여, 도로의 조기 개통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서 승인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우선 시공함</p> <p>- 최종 실정보고 승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주청에 예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점 부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p>		

측정번호	2.5(다)	부과일자	2021. 11월
별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업 체 : 1점 기술인 : 각 1점	기술인 : 각 1점	업 체 : 취소 기술인 : 기각
처분내용	<p>- 책임감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공사착수 단계 현장관리)제11항에 따라 공사 착공 즉시 설계도면과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사로하여금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중요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하나, 설계도서의 하자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음.</p> <p>- 책임감리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설계도서에는 보도가 단일경사로 되어 있으나 이중경사로 시공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됨.</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제기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기존보도와 기존도로 사이에서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특성상 기존도로와 보도의 높이에 맞도록 현장에서 횡단경사 조정이 불가피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횡단경사) 및 제47조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공법 및 수량, 금액에도 변화가 없어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여 우선 시공 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
--	---

○ [별첨 2.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관련

측정번호	2.7(다)	부과일자	2020. 6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1점	확정통지 -	처분결과 별점취소
처분내용	- 당해공사에서 수직구 토류벽 레미콘이 타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반입자재(레미콘)에 대하여 시험실 미설치, 시험기구를 반입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이의제기 내용	- 공사착공 전 관련규정에 의해 시험실 및 시험기구를 구비하고 품질시험을 자체 시행하여야 하나, 사무실 부지에 대한 유관기관 인.허가가 지연되는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 하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압축강도는 레미콘 생산업체 시험실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공인기관시험업체(건설품질 기술원)에 의뢰하여 품질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측정번호	2.7(다)	부과일자	2021. 10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p>-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의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항목 중</p> <p>1) 품질시험대상 항목을 누락하고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 (가설기자재 - 동바리·비계 등, 콘크리트배합설계)</p> <p>2) 품질시험대상 항목을 누락하였으나 도래하지 않은 공정 (아스콘, 구조물 줄눈 채움재, 균열보수재 및 포장용콘크리트)</p> <p>3) 품질관리자 교체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 미 변경</p>		
이의제기 내용	<p>-공사 착공 후 1년간 발주청에서 직접감독으로 시행</p> <p>1) 시스템 동바리는 직접감독 체제에서 반입 물량과 동일 자재로 직접감독시 품질시험을 당연히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KS 안전인증서 확인 및 구조계산서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레미콘에 대한 배합설계는 직접감독 수행시 실시하여 감독관 확인</p> <p>2) 도래하지 않은 일부 공종의 시험항목 일부 누락을 확인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품질시험계획서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여 개정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음</p> <p>3) 품질관리자 사직으로,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계획서 변경 검토 보고 완료함</p>		

○ [별첨 2.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2.8(가)	부과일자	2019. 1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 실시 미흡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강도 시험결과와 타현장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없으며,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을 확인 한바 균열 등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압축강도 시험 횟수는 특별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함 		

측정번호	2.8(가)	부과일자	2019. 3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구조물의 공장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공장에서 자재 납품을 승인하여 주요자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재’는 그 자체의 적합성에 관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제작되어 있는 사용자재를 다시 절단하거나, 접합하는 가공공장의 공장인증 여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또한, 철골가공공장의 공장인증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권장되고 있는 임의적 사항으로 강제적 사항이 아니며, 사용된 자재는 KS인증 자재로 품질에 문제가 없음 		

측정번호	2.8(나)	부과일자	2022. 7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SMAT-CON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건설신기술 지정 및 계약 내용 등과 다르게 시공		
이의제기 내용	- SMAT-CON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건설신기술 지정 및 계약 내용 등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산화슬래그 잔골재를 계약내용 등과 같이 100% 혼합하여 시공], 본 건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명기된 벌점 부과 기한이 종료됨을 소명함		

측정번호	2.8(나)	부과일자	2022. 8월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건설용 자재 일부를 설계량 미만으로 사용		
이의제기 내용	- 준공 후 7년 경과,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2년이 초과한 공사에 대하여 ○○ 자재 함량 부족을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부적합 ※ 벌점 부과 기한(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단,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 [별첨 2.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 유지 또는 보고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0(나)	부과일자	2020. 5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교분야 검측요청서 월간업무보고서 제출시 누락 - 교량 받침부 시공 부적정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교분야 검측요청서를 월간업무보고서 제출 시 누락한 것은 단순 과실로 추후 제출 - 교량 받침부 시공 부적정에 관련, 시공중인 현장에 설치된 교좌장치의 허용 이동량이 50mm를 초과할 우려만으로 별첨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준공전 교좌장치 기수정) 		

○ [별첨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 관련

측정번호	2.12(가)	부과일자	2022. 4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 토질 및 지질분야의 기술지원기술인 A씨를 대신하여 B씨가 약 〇회 정도 현장점검을 하였고, A씨가 현장점검을 한 것처럼 A씨의 도장을 날인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함		
이의제기 내용	<p>- 기존 토질 및 지질분야의 기술지원기술인을 임의변경한 것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A씨의 건강상태, 고령임을 감안할 때 동일분야 기술능력이 우수한 B씨로 하여금 해당공정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한 바, 부실공사 발생 우려를 해소·감소함.</p> <p>- 이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임의변경 보다는 공사의 효율적 수행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별첨 부과 여부 재판단 필요</p>		

측정번호	2.12(가), 2.16(가)	부과일자	2022. 4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p>-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p> <p>-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p>		
이의제기 내용	<p>- 기술지원기술인의 직접 점검이 곤란한 경우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당사 소속의 동등 이상의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점검 대행,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기술지원기술인에게 보고 및 필요시 해결방안 제시</p> <p>- 주요 구조물 시공시 담당 기술지원기술인이 직접 시공실태를 점검 실시하고, 20여건의 기술검토를 시행 양질의 시공을 위해 노력(공사비 절감)</p>		

○ [별첨 2. 1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5(나)	부과일자	2021. 7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p>- ① 가설(EGI)웁스 시공 부적정, ② 지주 및 보조지주 설치간격 과다, 일부 해체 및 보강조치 미흡, ③ 웁스 상부-가로수 연결 부재 임의 시공 및 고정상태 불량 ④ 현장여건(지장물 등)을 고려한 시공상세도 작성, 구조계산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행정절차 미흡</p>		
이의제기 내용	<p>-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설울타리’는 구조검토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이 아니라 ‘기타 가설 구조물’에 해당</p> <p>※ 공사참여자(설계자, 시공자, 발주청 공사감독자) 관련 사항 인지</p>		

- [별첨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측정번호	2.16(가)	부과일자	2022. 2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1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공사지연으로 27개월간 기술지원 기술인이 월1회 이상 현장점검과 기술지도 등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기술지원기술인에게 현장을 방문토록 지시하거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현장점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지연 및 민원에 따른 공사구역 변경, 재설계로 인한 공사미착수 등의 사유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 		

○ [별첨 2.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관련

측정번호	2.17(나)	부과일자	2020. 4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 공사 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준공 후 광범위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이의제기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말하는 하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에서 정하는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를 말하며, 본 건의 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별첨 2. 18] 하도급 관리 소홀 관련

측정번호	2.18(나)	부과일자	-
벌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벌점취소
처분내용	- 하도급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때까지 통보하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어 하도급 관리소홀로 벌점 부과		
이의제기 내용	- 토공 및 흙막이공사 하도급으로 당사가 용역에 착수하여 현장에 배치되기 이전에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가 용역에 착수 한 이후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내 발주처로 하도급 통보한 사실을 확인함.		

[2. 설계 등 용역 분야]

○ [별첨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관련

측정번호	3.1, 3.6	부과일자	2019. 5월
별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5점	1점	경감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소홀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와 합동 현장조사 시행 및 관련기관의 업무협의 비협조에 대해 발주처 담당감독에게 보고 후, 발주처 방침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음을 적극 소명. 		

○ [별첨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관련

측정번호	3.3(가)	부과일자	2020. 12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 계획고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발생		
이의제기 내용	- 혹한의 기상과 울창한 수목, 급경사 등 최악의 지형 조건에서도 측량팀을 투입하여 측량값 오차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측량값이 현장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측량팀과 설계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원활한 공정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최단 기한 내 변경도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전 회의참석은 물론 시공 중에도 회의참석 및 현장 요구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함		

○ [별점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관련

측정번호	3.5(가)	부과일자	2020. 12월
별점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3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지장물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소홀로 내역서 내 공중누락,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현장실정과 맞지 않아 공사수행 곤란 등 공사비가 변경됨		
이의제기 내용	- 현장사정 변경으로 설계변경 사항 발생 및 공사발주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총공사비 변경 사유 소명 (총공사비 대비 5%미만 변경으로 별점 미부과)		

○ [별첨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관련

측정번호	3.6	부과일자	2019. 5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고가하부에 지축역사가 위치하여 지장물 이설 방대 및 작업 공간 협소로 인한 교량받침 교체		
이의제기 내용	- 지축역은 과업내용서상 과업대상외 시설물로 발주처 감독의 구두요청에 의해 별도의 용역비 없이 발주처 감독이 제공한 설계자료와 합동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 하였음을 적극 소명		

측정번호	3.6(나)	부과일자	2021. 10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점취소
처분내용	- 시추조사 결과 등 지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토공사 설계로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사업손실 발생		
이의제기 내용	- 토질조사 내용만으로 지중의 전석양을 예측하기 어려운 설계 여건에 대하여 소명하고, 증액 공사비에 대해 상세검토한 설계사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 [별첨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관련

측정번호	3.7(나)	부과일자	2019. 6월
별첨부과 현황	사전통지	확정통지	처분결과
	2점	-	별첨취소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동일 관급자재에 대해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PVC이중벽관의 외압강도를 상이하게 작성하여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됨 		
이의제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사는 자재에 재한 검토만을 진행할 뿐, 자재선정과 자재 발주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별첨을 부과 받는 것은 과함을 소명 		

부록 1 별점 총괄표 서식 및 작성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별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별점	부과일 (연월일)	⑦ 별점 합계	⑧ 점검수 합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 ⑦란의 별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별점 합계를 적습니다.
-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별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 영역	② 업체명 [법인등록 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 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 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 사고 발생 관련 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인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작성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점검 현장(부실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도 작성)

② 작성방법

○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기재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시공
주택건설등록업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시공
건축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용역
측량업	현재 해당사항 없음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

○ “점검종류”란은 현장점검, 자체감사, 시공실태점검 등을 기재하되 자체감사 등을 제외한 현장점검·시공실태 점검 등의 경우 아래 표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목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항목 번호(a/b/c/d)를 추가적으로 기입 ☞ 예 : 현장점검(a)

< 건설기술법 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목 >

- a.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b.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c.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d.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별지 제37호서식의 ⑧점검수 합계란은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각 업체의 참여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기입

☞ 예 : 점검수 합계가 총 3건인 경우(업체별 건수와 지분율을 각각 기재)
→ 3건(80%)

* 단독 도급일 경우는 100%,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부록 2 피처분자 이의제기 의견서 서식

의견서

공사(용역)명			
제출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라 대표자명, 해당 기술인등일 경우 직위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input type="checkbox"/>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input type="checkbox"/> 이의제기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div>			
※ 관련 증빙서류			

* 확인자는 관련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직위 및 성명을 적습니다